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9.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수정이유

「행정기본법」 또는 「행정절차법」의 인허가의제 관련 규정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려는 경우 각각 ‘따른다’와 ‘준용한다’로 일관성있게 표현되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인허가의제 관련 규정도 다른 개정안과 같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효과가 발생함을 명시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하며, 시행령 개정이 수반되는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단서를 신설함.

수정주요내용

가. 적용 및 준용 표현 통일(안 제1조, 제4조 등)

나. 관계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인허가의제효과 발생함을 명시(안 제7조)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안 부칙 제1조단서
신설)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한다)”를 “한다)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르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에 따라”를 “인·허가등의”로,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을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중 “전략계획수립권자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을 “인·허가등의”로, “협의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를 한”을 “미리 협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제13조의4제2항에”를 “제13조의4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제13조의2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의 제출 및 통합 고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를한”을 “미리 협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를한”을 “미리 협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

지에 따른다.

제1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를”을 “미리 협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등 또는 변경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하여”를 “관하여 제3항에 따라”로, “협의를”을 “미리 협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4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양도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관리권자는 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

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제4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를”을 “미리 협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안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전기사업법」의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을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에도 불구하고”를 “인·허가등의”로, “제3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르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안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한다)”를 “한다)에 관하여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르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안 부칙 제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u>경우에는</u>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등(이하 “허가등”이라 <u>한다</u>)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 ----- ----- ----- ----- <u>경우</u> ----- ----- ----- ----- ----- ----- - <u>한다</u>)에 관하여 <u>시·도지사가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u> ----- ----- ----- -----.	제1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 ----- ----- ----- ----- <u>경우</u> ----- ----- ----- ----- ----- ----- - <u>한다</u>)에 관하여 <u>시·도지사가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u> ----- ----- ----- -----.
1. ~ 39. (생략)	1. ~ 39. (현행과 같음)	1. ~ 39.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	② ----- -----	② ----- -----

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 한
다. <후단 삭제>

<삭 제>

----- 한
다. <후단 삭제>

<삭 제>

<u>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u> <u>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u> <u>⑤ (생략)</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의 제의 기준·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하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u> <u>③ (현행 제5항과 같음)</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의 제의 기준·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르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u> <u>③ (현행 제5항과 같음)</u>
--	---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13조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경우, 그 사업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결정·인가·협의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 ----- ----- ----- ----- ----- ----- ----- ----- -- <u>인·허가등의</u> - ----- - <u>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u> ----- ----- ----- ----- ----- -----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 ----- ----- ----- ----- ----- ----- ----- ----- -- <u>인·허가등의</u> - ----- - <u>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u> ----- ----- ----- ----- ----- -----

시나 공고를 한 것
으로 본다.

1. ~ 29.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인
·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
계획의 승인(변경승
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
업계획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
련 서류를 함께 전
략계획수립권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③ (생 략)

④ 전략계획수립권
자로부터 협의를 요
청받은 관계 행정기
관의 장은 협의요청
을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

-----.

1. ~ 29.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 인·허가등의 -

----- 제2항-----

-----.

1. ~ 29. (현행과 같
음)

<삭 제>

③ 인·허가등의 --

----- 제2항-----

은 제3항에 따른 협의의 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 ----- ----- ----- ----- ----- -----. ④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서 규정한 사 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 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 24조부터 제26조까 지를 준용한다.	----- ----- ----- ----- ----- ----- -----. ④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서 규정한 사 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 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 24조부터 제26조까 지에 따른다.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3조의2(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해당 공장 및 진입로 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 (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u>협의한</u> 사항 (제5항 단서에 따라 협의가 생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의2(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 ----- ----- ----- ----- ----- ----- ----- ----- ----- ----- ----- ----- ----- ----- <u>미리 협의한</u> ----- ----- ----- ----- ----- -----.

⑦ <u>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u>	<u><삭 제></u>	<u><삭 제></u>
⑧ (생략)	⑦ (현행 제8항과 같음)	⑦ (현행 제8항과 같음)
<u><신 설></u>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3조의4(공장설립 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① 제13조의2제1항 각 호(같은	제13조의4(공장설립 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제13조의2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3조의4(공장설립 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제13조의2제1항 각 호(같은 항

<u>항 제1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인·허가등의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u> <u>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u> 제14조(공장의 건축 허가)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	<u>제1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의 제출 및 통합 고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u> 제14조(공장의 건축 허가) ① (현행과 같음)	<u>제1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의 제출 및 통합 고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u> 제14조(공장의 건축 허가) ① ----- ----- ----- ----- -----
---	--	--

은 것으로 의제되
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
고를 수리(제13조
의2제1항 제15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
가 및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해
당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인
가·승인·동의·
심사 또는 신고(이
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
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
하여는 해당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미리 협의한

본다. 1. ~ 1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 한 기간(「민원 처 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 라 회신기간을 연장 한 경우에는 그 연 장된 기간을 말한 다) 내에 의견을 제 출하지 아니하면 협 의가 이루어진 것으 로 본다.</u> 제14조의2(공장건축 물의 사용승인)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의 2제1항에 따라 공 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또 는 건축신고를 의 제 받은 자 및 제1	1. ~ 1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제1항부터 제4항 까지에서 규정한 사 항 외에 허가등 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 정기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u> 제14조의2(공장건축 물의 사용승인) ① (현행과 같음)	-----. 1. ~ 1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제1항부터 제4항 까지에서 규정한 사 항 외에 허가등 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 정기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u> 제14조의2(공장건축 물의 사용승인) ① ----- ----- ----- ----- ----- ----- -----
---	--	--

1.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
한 기간(「민원 처
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
라 회신기간을 연장

미리

협의 한

1.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
까지에서 규정한 사
항 외에 검사등 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
정기본법」 제24조

<u>한 경우에는 그 연</u> <u>장된 기간을 말한</u> <u>다) 내에 의견을 제</u> <u>출하지 아니하면 협</u> <u>의가 이루어진 것으</u> <u>로 본다.</u>	<u>부터 제26조까지에</u> <u>따른다.</u>	<u>부터 제26조까지에</u> <u>따른다.</u>
제16조(공장의 등록) ① ~ ⑤ (생략)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 설립등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등록·신고 및 허가(이하 이 조에서 “등록등”이 라 한다)에 관하여 제9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u>협의한</u> 사항에 대 하여는 다음 각 호 의 등록등을 한 것 으로 본다.	제16조(공장의 등록)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공장의 등록)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 ----- ----- ----- ----- ----- <u>미리 협의한</u> ----- ----- ----- -----.

1. ~ 19. (생 략) ⑦ ~ ⑩ (생 략) ⑪ <u>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0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u> ⑫ (생 략) <u><신 설></u>	1. ~ 19. (현행과 같음) ⑦ ~ ⑩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⑪ (현행 제12항과 같음) ⑫ <u>제6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등 또는 변경허가등 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u>	1. ~ 19. (현행과 같음) ⑦ ~ ⑩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⑪ (현행 제12항과 같음) ⑫ <u>제6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등 또는 변경허가등 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u>
---	---	---

[illegible]

라 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변경승인 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 에 따른 인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 ----- ----- ----- -----.	----- ----- -----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⑥ 제1항부터 제5항 까지에서 규정한 사 항 외에 인가등 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 정기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u>	<u>⑥ 제1항부터 제5항 까지에서 규정한 사 항 외에 인가등 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 정기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u>
제43조의3(이행강제 금) ① (생 략)	제43조의3(이행강제 금) ① (현행과 같 음)	제43조의3(이행강제 금) ① (현행과 같 음)
<u>② 관리권자는 제1 항에 따른 이행강제 금을 부과하기 전에 같은 항에 따른 이</u>	<u>② 관리권자는 제43 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른 처분·양도 의무가 발생한 날을</u>	<u>② 관리권자는 제43 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른 처분·양도 의무가 발생한 날을</u>

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③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양도의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관리권자는 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관리권자는 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u>징수할 수 있다.</u> <u>⑤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양도의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u> <u>⑥ 관리권자는 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u>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 그 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대한 다음 각	<u><삭 제></u> <u><삭 제></u>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 ----- ----- ----- -----
--	---	---

호의 허가·결정·
인가·협의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
라 한다)에 관하여
제45조의2제7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
지지정권자 및 관
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
가등을 받은 것으
로 보며, 제45조의2
제9항에 따라 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
등이 고시 또는 공
고된 것으로 본다.

1. ~ 10. (생략)

② ~ ④ (생략)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

1. ~ 10.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미리

협 의 한

1. ~ 10.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u>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u> ⑥ (생략) <u><신설></u>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등 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등 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illegible]

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21.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

----- 인·허
가등의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 미리 협
의한 -----

1. ~ 21.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제1항 및 제2항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
제의 기준·효과 등
에 관하여는 「행정
기본법」 제24조부
터 제26조까지에 따

----- 인·허
가등의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 미리 협
의한 -----

1. ~ 21.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제1항 및 제2항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
제의 기준·효과 등
에 관하여는 「행정
기본법」 제24조부
터 제26조까지에 따

면 미리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
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
청을 받은 날부터 2
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
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
루어진 것으로 본
다.

⑤ 제4항에도 불구
하고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은 제3항에 따
른 협의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필

르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
하여는 「행정절차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
20조제2항 중 “처분
기준”은 “처리기준”
으로, “공표”는 “고
시”로 본다.

<삭 제>

② 인·허가등의 -

----- 제1항-----

르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
하여는 「행정절차
법」 제20조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
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
분기준”은 “처리기
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삭 제>

② 인·허가등의 -

----- 제1항-----

요로 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 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⑥ <u>산업통상자원부</u> <u>장관은 제1항에 따</u> <u>라 의제되는 인·허</u> <u>가등의 처리기준을</u> <u>관계 중앙행정기관</u> <u>으로부터 제출받아</u> <u>통합하여 고시하여</u> <u>야 한다.</u>	----- ----- ----- ----- ----- ----- --- <u><삭 제></u>	----- ----- ----- ----- ----- ----- --- <u><삭 제></u>
---	--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2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진흥지구 의 개발계획에 대하 여 시행자가 실시계 획의 승인을 받은 <u>경우에는</u> 「지역 개 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결정·허가·승인 ·심사·인가·신 고·면허·등록· 협의·지정·해제 및 처분 등 외에 다 음 각 호의 허가· 신고·대부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u>한다</u>)을 받은 것으 로 본다. 이 경우 「지역 개발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 라 실시계획이 고시 되었을 때에는 관계	제12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 ----- ----- ----- <u>경우</u> ----- ----- ----- ----- ----- ----- ----- ----- ----- ----- ----- <u>한다</u>)에 <u>관하여 실시계획의</u> <u>승인권자가 인·허</u> <u>가등의 관계 행정기</u> <u>관의 장과 미리 협</u> <u>의한 사항에 대해서</u> <u>는 해당 인·허가등</u> --. -----	제12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 ----- ----- ----- <u>경우</u> ----- ----- ----- ----- ----- ----- ----- ----- ----- ----- ----- <u>한다</u>)에 <u>관하여 실시계획의</u> <u>승인권자가 인·허</u> <u>가등의 관계 행정기</u> <u>관의 장과 미리 협</u> <u>의한 사항에 대해서</u> <u>는 해당 인·허가등</u> --. -----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 ----- -----.	----- ----- -----.
1. 삭 제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2.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경우 실시계획의 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에 의견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u>	<u><삭 제></u>	<u><삭 제></u>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u>제4항에 따른 인</u>	④ <u>제3항</u> -----	④ <u>제3항</u> -----

· 허가등 의제 협의
회의 구체적인 구성
· 기능 및 운영,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항 및 「지역

-----.

⑤ 제1항부터 제4항
까지에서 규정한 사
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
정기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하고, 처리기준
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
차법」 제20조제2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
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 리 기 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삭 제>

-----.

⑤ 제1항부터 제4항
까지에서 규정한 사
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
정기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르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
하여는 「행정절차
법」 제20조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
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
분기준”은 “처리기
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삭 제>

<u>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u> <u>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u>	<u><삭 제></u>	<u><삭 제></u>
---	---------------------------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712
----------	------

발의연월일 : 2025. 3. 7.

발 의 자 : 박성민 · 김성원 · 박덕흠
한지아 · 서일준 · 백종현
정동만 · 김승수 · 구자근
김희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가. 적용 및 준용에 대한 표현을 각각 ‘따른다’ 및 ‘준용한다’로 통일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인허가의제
효력이 발생함을 명시

다. 시행령 개정을 수반하는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부터 시행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한다)”를 “한다)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르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제2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3조에 따른다.

제3조(「광업법」의 개정)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을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4조(「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의 개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에 따라”를 “인·허가등의”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을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중 “전략계획수립권자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을 “인·허가등의”로, “협의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5조(「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장과”를 “연기와”로 한다.

- ① 무역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등 가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제14조의 제목 “(이의신청)”을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6조(「산업융합 촉진법」의 개정)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해당”을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으로 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7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한”을 “미리 협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제13조의4제2항에”를 “제13조의4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제13조의2제1항 각 호 (같은 항 제1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의 제출 및 통합 고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를한”을 “미리 협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를한”을 “미리 협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를한”을 “미리 협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등 또는 변경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하여”를 “관하여 제3항에 따라”로, “협의를”을 “미리 협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4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양도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관리권자는 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제4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를”을 “미리 협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8조(「산업표준화법」의 개정)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를 “인증표시의 제거, 6개월 이내의 인증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로 한다.

제9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 ⑦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37조제7항 전단 중 “제18조제7항·제8항”을 “제18조제7항”으로 한다.

제10조(「송유관 안전관리법」의 개정)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 따라”를 “허가등의”로,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을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1조(「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6(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12조(「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에 따라 다른”을 “허가등의 관계”로,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을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같은 법 제24조제4항 후단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 따라 다른”을 “인·허가

등의 관계”로, “협의를 결과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을 “미리 협의를 결과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같은 법 제24조제4항 후단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3조(「전기사업법」의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을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에도 불구하고”를 “인·허가등의”로, “제3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르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제14조(「전시산업발전법」의 개정)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시시설에 대하여”를 “전시시설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로,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제5항”을 “같은 법 제11조제5항”으로, “관하여”를 “관하여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제4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관하여”를 “관하여 검사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허가등 및 검사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및 검사등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5조(「집단에너지사업법」의 개정)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 따라”를 “인·허가등의”로,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을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 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6조(「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한다)”를 “한다)에 관하여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

의 기준·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
까지에 따르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
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
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제17조(「한국가스공사법」의 개정)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사가 제16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인정 또
는 협의(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이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정한 사항에 대
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
은 것으로 본다.

제16조의3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45일”로 한다.

제18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

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u>경우에는</u>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u>한다</u>)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 ----- ----- <u>경우</u> ----- ----- ----- <u>한다</u>)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 -----.
1. ~ 39. (생략)	1. ~ 39.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u>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u>	② ----- ----- ----- ----- ----- ----- <u>한다. <후단 삭제></u>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생략)

<삭 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르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③ (현행 제5항과 같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4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2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 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 법」 제33조에 따른다.</u>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3조(허가 등의 의제) ①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해제 및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3조(허가 등의 의제) ①----- ----- ----- ----- ----- <u>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u>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②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2조제2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	② <u>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u>
③ <u>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관련 허가등에 필요한 심의, 의</u>	<u><삭 제></u>

건 청취 등 절차에 걸리는 기간
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
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
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를 된 것으로 본
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13조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경우, 그 사업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결정·인가·협의를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u>제3항에 따라</u>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u>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u>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 ----- ----- ----- ----- ----- ----- ----- ----- <u>인·허가등의</u> ----- <u>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u> ----- ----- ----- ----- ----- -----.
1. ~ 29. (생략)	1. ~ 29.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에</u>	<u><삭 제></u>

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의 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 인·허가등의 -----

--- 제2항-----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무역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과징금 납부의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나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무역 등 경제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제12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무역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
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3조의2(이행강제금) ① (생
략)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
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
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
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
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구체
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
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10조제1항
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

② ----- 연기와 -----

-----.

제13조의2(이행강제금) ① (현행
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등
가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
지에 따른다.

<삭 제>

<u>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u> ⑤ 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등 가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무역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이의신청)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u><삭 제></u> <u><삭 제></u> 제14조(이의신청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1조제1항 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신청한 제조사등은 적합성 인증과 관련 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 청을 할 수 있다.	제15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 ----- ----- ----- ----- <u>적합성 인 증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해당 ----- -----</u>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 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 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에 따른다.
② (생략) <u><신설></u>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인가·허가 등의 의 제)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 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해당 공장 및 진입로 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면 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 다)에 관하여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u>협 의한</u> 사항(제5항 단서에 따라 협의를 생략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 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의2(인가·허가 등의 의 제) ① ----- ----- ----- ----- ----- ----- ----- ----- ----- <u>미리 협</u> <u>의한</u> ----- ----- ----- -----.
1. ~ 18. (생략)	1. ~ 1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 라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 도개설 등의 허가를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 및 제3항 각 호	⑤ ----- ----- ----- -----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
조의4제2항에 따라 고시된 처리
기준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생략)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6항
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
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
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⑧ (생략)

<신설>

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
준의 고시 등) ① 제13조의2제1
항 각 호(같은 항 제16호는 제
외한다)에 따른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
----- 제13
조의4-----

-----.

⑥ (현행과 같음)

<삭제>

⑦ (현행 제8항과 같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
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
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
준의 고시 등) 제13조의2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6호는 제외한
다)에 따른 인·허가등의 처리
기준의 제출 및 통합 고시에 관

그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제13조의2제1항제15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동의·심사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illegible]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등
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16. (생략)

② ~ ④ (생략)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 받은 자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검사·신고·동의 및 신청(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

-----미리 협의한-----

1. ~ 1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

-----미리
협의한-----

1.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6조(공장의 등록)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미리 협

의한

1. ~ 19. (현행과 같음)

⑦ ~ ⑩ (현행과 같음)

<삭 제>

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⑫ (생략)

<신 설>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기관·관리권자 또는 시·도지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결정·인가·협의 또는 승인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

⑪ (현행 제12항과 같음)

⑫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등 또는
변경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
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illegible]

관의 장과 협의를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3조제6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변경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 10. (생략)

② ~ ⑤ (생략)

<신설>

제43조의3(이행강제금) ① (생략)

②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같은 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협의한-----

-----.

1. ~ 10.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43조의3(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양도의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관리권자는 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 업무를 대통령령으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양도의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⑤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양도의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관리권자는 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로 정하는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삭 제>

<삭 제>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

	<u>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u> <u>「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u> <u>26조까지에 따른다.</u>
--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9조 제6항 또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하거나, <u>인증 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u> ,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는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일부 사업장에 대한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일부 사업장에서의 판매의 정지를 포함한다.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① ----- ----- ----- ----- ----- ----- ----- ----- ----- ----- <u>인증 표시의 제거, 6개월 이내의 인증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u> ----- -----.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① ~ ⑥ (생략) ⑦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삭 제>
⑨ (생략)	⑨ (현행과 같음)

제37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① ~ ⑥ (생략) ⑦ 석유대체연료의 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충당, 과다환급금의 징수 및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에 관하여는 <u>제18조제7항·제8항</u>,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 중 “제18조”는 “제37조”로,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보고, 제19조의2 중 “제19조”는 “제37조”로 보며, 제20조 중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는 각각 “제37조”로 본다.	제37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 <u>제18조제7항</u>----- ----- -----, ----- ----- ----- ----- ----- -----.
--	--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허가 등의 의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 또는 지정(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u>제2항에 따라</u>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허가 등의 의제) ① ----- ----- ----- ----- ----- ----- 허가등의 의 -----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 -----.
1. ~ 15. (생략)	1. ~ 15. (현행과 같음)
②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그 공사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	<u><삭 제></u>
③ (생략) <u><신 설></u>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③ <u>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u>

	<u>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 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 지에 따른다.</u>
--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24조의6(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4조의2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u> <u>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u>	<u>제24조의6(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u>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허가등의 의제 등) ①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신고·지정·등록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허가등의 의제 등) ① ----- ----- ----- ----- ----- ----- 허가등의 관계 -----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 -----.
1. ~ 17. (생략)	1. ~ 17. (현행과 같음)
② 허가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신청 시에 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같은 법 제24조제4항 후단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 서류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삭 제>

<u>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 다.</u> <u><신 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 26조까지(같은 법 제24조제4항 후단은 제외한다)에 따른다.</u>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의3(관련 인·허가등의 의 제) ① 시·도지사가 제98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 권한을 위임받거나 시·도지사가 허가권자인 태양광 발전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면허·협의를 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회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의3(관련 인·허가등의 의 제) ① ----- ----- ----- ----- ----- ----- ----- ----- ----- ----- ----- ----- ----- -----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 ----- -----.
1. ~ 21. (생략)	1. ~ 21.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삭 제>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업
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
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
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
다.

③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를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
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
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
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
로 본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
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
의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
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
까지에 따르고, 처리기준의 통
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
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
시”로 본다.

<삭 제>

② 인·허가등의 -----
----- 제1항-----

필요로 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⑥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u>	----- ----- ----- -----. <삭 제>
---	---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전시시설 건축시 허가 등의 의제) ① <u>전시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u>	제27조(전시시설 건축시 허가 등의 의제) ① <u>전시시설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u> ----- ----- ----- <u>같은 법 제11조제5항 -----</u> ----- ----- ----- ----- ----- <u>관하여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u>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전시시설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u>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u>	② ----- ----- ----- ----- ----- <u>같은 조 제4항 -----</u> -----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 또는 신고(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3. (생략)

③ 허가등 및 검사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시시설의 건축허가신청 및 건축신고와 사용승인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령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 관하여 검사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
-----.

1. ~ 3. (현행과 같음)

③ 허가등 및 검사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및 검사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u>한다.</u>	
------------	--

신·구조문대비표

– 101 –

<u>제출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u> <u>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u> <u>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u> <u>「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u> <u>26조까지에 따른다.</u>
--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결정·허가·승인·심사·인가·신고·면허·등록·협의를 지정·해제 및 처분 등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대부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 ----- ----- <u>경우</u> ----- ----- ----- ----- ----- ----- ----- 한다)에 <u>관하여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u> <u>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u> <u>서는 해당 인·허가등</u> ---. ---- ----- -----.
1. 삭제	
2. ~ 8. (생략)	2. ~ 8.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경우 실시계획의 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u>	<u><삭 제></u>

에 적합하고 공익을 현저히 해
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그 기간에 의견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
어진 것으로 본다.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른 인·허가등 의
제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기
능 및 운영,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및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의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④ 제3항-----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
제의 기준·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
26조까지에 따르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
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
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
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
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삭 제>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u> <u>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u> <u>그 처리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u> <u>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u> <u>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u> ⑦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u> <u>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u> <u>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u> <u>한다.</u>	<u><삭 제></u>
---	---------------------------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u>공사가 제16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 또는 인정(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u> 1. ~ 18. (생략) <u><신 설></u>	제16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 <u>공사가 제16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인정 또는 협의(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u> 1. ~ 18.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u>

	<u>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u> <u>제4항 전단 중 “20일”은 “45일”</u> <u>로 한다.</u>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5(이행강제금) ①·② (생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의5(이행강제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삭 제>

<u>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u>	<u><삭 제></u>
<u>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u>	<u><삭 제></u>

